「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하여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전산화, 구급차 운행 정보의 실시간 전송 규정 마련 등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구급차 운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구급차에 대한 보상과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강화(안 제39조)

1) 이송 중 환자의 응급도·중증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함

나.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안 제40조제4항 및 5항)

1) 출동 및 처치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토록 함

다.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나목)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행정청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라. 이송처치료의 기준 조정(안 별표 3)

1) 인건비 등 이송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요금, 추가요금 조정

2) 일반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는 부가요금 폐지

3) 야간할증 적용 시간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확대

4) 토요일·공휴일할증을 신설하고 야간할증과 동일하게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5)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대기요금 도입

마.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안 별표 16의2)

1)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 정보 확인 및 용도 외 사용 예방 등 구급차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

바. 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 18)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도 보완

2)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실효성 제고

사. 인용조항 정비(안 제36조의2제5항, 안 별표 16의2)

1)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39조 중 “응급환자”를 “환자”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의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를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조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하는”을 “자본금을 증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중 “1부.”를 “1부.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의 다. 구급의약품의 1) 의약품의 장비란의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다음에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신설한다.

별표 16 제2호의 다. 구급의약품의 1) 의약품의 장비란의 “다) 아이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음에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신설한다.

별표 16의2를 제1호가목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제2호가목4) 중 “기록의 제출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를 “기록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해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별표 16의2 제2호가목의 5)를 8)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기록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급차

운행 기록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구급차 운행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6)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 기록 또는 영상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8 제2호처목 중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집·보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작·위조·변조한 경우”로 한다.

별표 18 제2호허목 중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작성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조작·위조·변조한 경우”로 한다.

별표 18 제2호모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의 ‘공통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사업용 고장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을 “자본금을 증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란의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다음에 “5.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를 “본인사실확인서 1부.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영자의 경우 : 2026년 7월 1일
2.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영자의 경우 : 2027년 7월 1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임.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로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

(4) 선박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 부과.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별도 청구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3항 관련)

1. 특수구급차

구 분	장 비 분 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심장 박동 회복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가)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척추보호대 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라. 통신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2. 일반구급차

구 분	장 비 분 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나) 청진기 다) 휴대용 혈압계 라)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나)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4) 외상 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제38조제4항 관련)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해서는 안된다

5)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기록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급차 운행 기록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구급차 운행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6)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

급차 운행 기록 또는 영상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1)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마. (생략)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저. (생략)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작·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커~퍼. (생략)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 대장을 미작성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조작·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로. (생략)				
모.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법 제5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보~코. (생략)	제3항제1호	7일	1개월	2개월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table>
<tr><td colspan="3">영수증번호</td><td>결제방법</td><td colspan="2">☐ 현금 ☐ 카드 ☐ 기타</td></tr>
<tr><td colspan="2">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td><td></td><td>운용기관 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무소 소재지</td><td></td><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차량등록번호</td><td></td><td>운전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차량 주행 거리</td><td rowspan="2">Km</td><td>기관도착시간</td><td colspan="2">YYYY-MM-DD HH:MM</td></tr>
<tr><td>환자인계시간</td><td colspan="2">YYYY-MM-DD HH:MM</td></tr>
<tr><td colspan="6">이송처치료 세부내역</td></tr>
<tr><td colspan="2">구 분</td><td>①기본요금
(10km 이내)</td><td>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td><td>③할증요금
(18:00~09: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td><td>④대기요금
(기관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td></tr>
<tr><td rowspan="4">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td><td>일반 구급차</td><td rowspan="2">☐ 40,000원</td><td>☐ __km x 1,500원</td><td>☐ 8,000원 + __km x 300원</td><td>☐ 대기시간 __분 x 6,000원</td></tr>
<tr><td>특수 구급차</td><td>☐ __km x 2,300원</td><td>☐ 19,100원 + __km x 460원</td><td>☐ 대기시간 __분 x 6,000원</td></tr>
<tr><td rowspan="2">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td><td>일반 구급차</td><td>☐ 26,600원</td><td>☐ __km x 1,000원</td><td>☐ 5,320원 + __km x 200원</td><td>☐ 대기시간 __분 x 6,000원</td></tr>
<tr><td>특수 구급차</td><td>☐ 63,600원</td><td>☐ __km x 1,500원</td><td>☐ 12,720원 + __km x 300원</td><td>☐ 대기시간 __분 x 6,000원</td></tr>
<tr><td colspan="5">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td><td>원</td></tr>
<tr><td>이용자명</td><td>(서명)</td><td colspan="2">이용자 생년월일</td><td></td></tr>
<tr><td>납부자명</td><td>(서명)</td><td colspan="2">이용자와의 관계</td><td></td></tr>
<tr><td>이송 중 처치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의 종류*	[1] 현장 이송 [2] 의료기관간 이송 [3] 미이송(사유:) [9] 기타( )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기관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자*	종별	[1] 의사 [2] 간호사 [3] 1급 응급구조사 [4] 2급 응급구조사 [9] 기 타( )		환자인수자*	종별	[1] 의사 [2] 간호사 [3] 1급 응급구조사 [4] 2급 응급구조사 [9] 기 타( )	
	면허번호		성명 (서명)		면허번호		성명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1] 전화번호( ) [9]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1] 환자/보호자 [2] 의사 [3] 구급대(이송자) [9] 기타( )	선정 이유*	[1] 치료받던 병원 [2] 전문진료 가능 [3] 근거리 [4] 환자/보호자원함 [9] 기타:( )	선정 방법*	[1] 직접 연락 [2] 구급상황관리센터 [3] 중앙응급의료센터 [4] 자체 판단 [9] 기타 ( )

2. 인적사항

환자	성명*	([ ]확인불가)	성별*	[1]남 [2]여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연락처*	([ ] 확인불가)			주소*	([ ] 확인불가)											
보호자	[1] 있음 [2] 없음	성명		연락처		관계	[1] 부모 [2] 배우자 [3] 자녀 [4] 친척 [5] 친지 [9]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1] 소생 [2] 긴급 [3] 응급 [4] 준응급 [5] 비응급	질병여부*	[1] 질병 [2] 질병외
의식수준*	[1] A [2] V [3] P [4] U	의심질환명*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산소포화도	%	

환자증상 (중복가능)	[1] 전신 ① 고열 ② 오한 ③ 마비 ④ 청색증 ⑤ 아나필락시스 ⑨ 기타_____ [2] 신경계 ① 의식소실 ② 경련/발작 ③ 두통 ④ 감각이상 ⑤ 어지러움 ⑨ 기타_____ [3] 안면 ① 안면통증 ② 이명 ③ 목통증 ④ 코피 ⑤ 이물감(_____) ⑨ 기타_____ [4] 호흡기계 ① 호흡곤란 ② 호흡정지 ③ 객혈 ④ 기침 ⑤ 알레르기반응 ⑨ 기타_____ [5] 심혈관계 ① 심정지 ② 가슴불편감(흉통포함) ③ 두근거림 ④ 실신 ⑨ 기타_____ [6] 소화기계 ① 복통 ② 오심 ③ 구토 ④ 혈변 ⑤ 설사 ⑥ 변비 ⑨ 기타_____ [7] 외상 ① 골절(_____) ② 탈구(_____) ③ 삠(_____) ④ 열상(_____) ⑤ 찰과상(_____) ⑥ 타박상(_____) ⑦ 절단(_____) ⑧ 압궤손상(_____) ⑨ 화상(_____) ⑩ 기타_____ [8] 기타 ① 응급분만 ② 기타_____
과거력*	[1] 없음 [2] 뇌혈관질환 [3] 고혈압 [4] 당뇨 [5] 결핵 [6] 간염 [7] 심장질환 [8] 암 [9] 기타:_____
출 발 시 처치상태*	[1]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_____ [2]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_____리터/분 [3]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 혈압 [ ] 맥박 [ ] 산소포화도 [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4] 약품: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_____/_____ ③ 정맥로2:_____/_____ ④ 정맥로3: _____/_____ ⑤ 경구투여: _____ [5]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_____ [6]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鼻胃管, L-tube)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_____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1] 소생 [2] 긴급 [3] 응급 [4] 준응급 [5] 비응급	의식수준*	[1] A [2] V [3] P [4]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산소포화도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1]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_____ [2]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_____리터/분 [3]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 혈압 [ ] 맥박 [ ] 산소포화도 [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4] 약품: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_____/_____ ③ 정맥로2:_____/_____ ④ 정맥로3: _____/_____ ⑤ 경구투여: _____ [5]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⑨ 기타:_____ [6]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탯줄결찰 ⑤ 중심정맥 ⑨ 기타: _____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1] 특수구급차 [2] 일반구급차 [9]기 타( )		
운전자*		[1] 1급 응급구조사 [2] 2급 응급구조사 [3] 간호사 [4] 의사 [8] 없음 [9]기 타( )		(서명)
작성자*		[1] 1급 응급구조사 [2] 2급 응급구조사 [3] 간호사 [4] 의사 [8] 없음 [9]기 타( )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계·인수자, 운전자 및 구급대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 연월일은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출동 연월일은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미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119 구급대 인계 등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⑤ 현장도착 연월일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⑦ 이송개시 연월일은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⑧ 이송종료 연월일은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⑪ 환자인계자 및 환자인수자는 환자를 인계 및 인수한 자의 종별, 면허(자격)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⑭ 의료기관 선정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의 전원지원을 통해 결정된 경우 '3중앙응급의료센터'로 기재합니다.

2. 인적 사항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① 분류결과는 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나타내며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② 질병여부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적습니다.
⑥ 환자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표기 하며, 중복작성 가능합니다. 외상의 경우, ( )안에 손상부위를 적습니다.
⑦ 과거력은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의 종류나 상해 등을 적습니다.
⑧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3 순환의 ③ 모니터링은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하며, 정맥혈 채혈은 정맥로 확보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⑨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① 분류결과, 의식수준, 생체 징후는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①, ④, ⑤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③ 응급분만 시 탯줄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③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구급차 등 구분		[ ] 일반 구급차 [ ] 특수 구급차 [ ] 항공기 [ ] 선박 [ ] 기타( )			
공통	운용기관명				
	통보(신고)번호				
	제작 연월일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운행연한	최초 운행연한			
		1차 연장 운행연한		3차 연장 운행연한	
		2차 연장 운행연한		4차 연장 운행연한	

운 행 기 록

운행연번	운 행 내 역								탑승인력	
	운행 목적 (번호)	출발 시간	출발지 명칭	도착 시간	도착지 명칭	운행 거리 (㎞)	누적 주행 거리(㎞)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	동승자 성명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운행기록대장은 구급차등의 모든 운행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빈칸이 없이 모두 기입하여야 함
2. 운행연번은 연월일 여섯자리 숫자와 운행차수를 예시(예시: 123456-1)와 같이 기입하여야 함. 이 때 다수의 운행기록이 있지만 운행 목적이 같은 경우 운행차수는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예시 : A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운행한 결과 3개의 운행기록이 작성된 경우 운행차수는 하나만 부여)
3. 운행목적은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번호로 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① 응급환자의 이송
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③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④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⑥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⑦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⑧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비(자동차 정기검사, 주유, 산소통 충전 등)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4. 모든 시간은 24시간제로 작성
5. 출발 시간은 구급차가 출발지에서 출발한 시간이며, 도착 시간은 도착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종료한 시간임
6. 출발지 명칭과 도착지 명칭은 차량 운행의 출발지와 도착지의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작성(ex. 차고지, 의료기관명, 요양병원 등)
7. 운행거리는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운행목적에 따라 도착지까지 구급차 등이 이동한 거리임
8. 누적주행거리는 구급차 계기판의 총 주행거리를 작성
9. 직전 누적주행거리에 ‘운행거리’를 더한 거리가 새로운 누적주행거리가 되며, 누적주행거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
10.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의 성명과 면허/자격번호를 작성
11. 다수의 운행기록이 있지만 운행 목적이 같은 경우 ‘운행 목적’,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 ‘탑승인력’은 한 번만 작성(예시 : A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운행한 결과 3개의 운행기록이 작성된 경우 운행 목적을 3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한 번 기입)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주사무소)					
구급차 및 영업구역(시·군·구 단위)		별 첨			
(지 도) 의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20,000원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영업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발생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 ④ 항(생략)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 ④ 항(현행과 같음)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 제4항 ---------- ---------- ---------- ---------- ---------- ---------- ---------- ------ 제4항제1호---------- ---------- ---------- ---------- ---------- ---------- ----------.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 환자 -- ---------- ---------- ---------- ---------- ---------- ----------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 생 략 > ②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③ < 생 략 >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 현행과 같음 > ② ---------- ---------- ---------- ---------- --------응급의료종사자의 --- ---------- ---------- ---------- ----------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 ---------- ----------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 ---------- -.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 ---------- ---. 이 경우 별지 제16조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 ---------- ---------- ---------- ---------- ---------- ---------- ----------.
1. 사업계획서 1부	1.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7. < 생략 >	3~7.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 ----------

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 ---------- -----.
1. < 생략 >	1. < 현행과 같음 >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가. < 생략 >	가. < 현행과 같음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나.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